

인천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가단211361 판결 [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5742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가단211361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변론 종결 2023. 1. 19.

판결 선고 2023. 2. 23.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통신기기 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이동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판매계약,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0. 11. 24. 원고가 소외 회사에 주식회사 D의 휴대전화 기타 제품, 인터넷 상품 등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판매한 다음 원고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이동통신 위탁점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판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제2조 위탁판매의 목적 및 방법

1. "갑"(원고)이 "을"(소외 회사)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D의 휴대폰, 기타 IT 제품 및 인터넷 상품(이하 "상품"이라 칭함)으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제8조 공급가격 및 기타 조건부 판매

1. "을"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발생한 판매대금을 "을"이 책임을 갖고 "갑"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이 부득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판매 시 단말기의 대금은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제9조 수수료 지급 방법 및 반환

1. "갑"은 "을"의 계약업무 수행의 대가 또는 장려를 위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수수료의 지급 조건 및 반환의 규정은 별도 합의된 매체를 통하여 공유한다.
5.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장려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 변제의 총당

1.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일반채무(수납금, 물품대금), 기타 채무(환수금 등 일반채무 이외의 채무)임.
2.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3. 해당 변제 채무에 대하여 "을"이 지급받을 금액이 없어 상계가 불가할 시 30일 이내 "을"은 "갑"에게 변제처리 하여야 함.
4. 3항에 대하여 30일 이내 변제 불가 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이행보증 청구 및 민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단, 해당 관리업무 회사가 별도로 있을 시 별도 회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서 상계 처리한다).

[표1 이 사건 판매계약]

- 2)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2020. 11. 25. 보험계약자 소외 회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증내용 '통신사업자 대리점(판매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특기사항에는 '보험계약자가 지원받는 지원(대여)금 채무는 담보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3)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판매계약 및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직전인 2020. 11. 23. 원고가 같은 날 소외 회사에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21. 7.부터 2021. 12.까지 매월 말일에 각 50,000,000원의 원금을 변제하며 2020. 12. 31.부터 매월 말일에 연 4.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판매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와 소외 회사의 금전지급 등 거래 경과

1) 원고는 2020. 11. 23.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여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회사가 2020. 12.경부터 2021. 6.경까지 원고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등을 공급받은 다음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①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금액 및 ②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유심 등 매입금액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 중 수수료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번호이동료는 제외하였다).

수수료금액 (A)	40,655,300	55,076,700	73,154,100	78,296,600	57,417,900	40,970,800	946,900
매입금액 (B)	16,546,900	10,345,000	28,026,600	19,832,000	15,906,600	10,653,200	383,000
차액 (A - B)	24,108,400	44,731,700	45,127,500	58,464,600	41,511,300	30,317,600	563,900

[표2 수수료금액, 매입금액 및 그 차액]

3) 원고는 소외 회사에 ① 2020. 12. 22. 선수수수료 100,000,000원, ② 2020. 12. 24. 수수료 1,961,900원, ③ 2021. 1. 13. 선수수수료 24,000,000원, ④ 2021. 4. 15. 선수수수료 20,000,000원, ⑤ 2021. 4. 23. 수수료 3,464,600원, ⑥ 2021. 5. 11. 선수수수료 5,467,600원, ⑦ 2021. 5. 24. 수수료 1,011,300원 등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선수수수료 합계 155,905,400원(= ① 100,000,000원 + ② 1,961,900원 + ③ 24,000,000원 + ④ 20,000,000원 + ⑤ 3,464,600원 + ⑥ 5,467,600원 + ⑦ 1,011,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폐업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1) 소외 회사는 2021. 6.경부터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2021. 6. 30.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21. 6. 11.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2021년 1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의

휴대전화, 유심 등 매입금액(위 표2 '매입금액'란 참조) 합계 85,146,400원(= 2021년 1월분 10,345,000원 + 2021년 2월분 28,026,600원 + 2021년 3월분 19,832,000원 + 2021년 4월분 15,906,600원 + 2021년 5월분 10,653,200원 + 2021년 6월분 38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85,146,400원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원고는 2021. 7. 8. 보험금 청구내용을 변경하면서 최종 청구금액을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내에서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따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판매계약 제8조 제2항의 문구, 휴대전화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유심 등 매입금액은 소외 회사의 수수료금액과 상계할 수 없고 현실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휴대전화, 유심 등 매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20. 12.경부터 2021. 6.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휴대전화, 유심 등 매입금액은 합계 101,693,300원(= 2020년 12월분 16,546,900원 + 2021년 1월분 10,345,000원 + 2021년 2월분 28,026,600원 + 2021년 3월분 19,832,000원 + 2021년 4월분 15,906,600원 + 2021년 5월분 10,653,200원 + 2021년 6월분 383,000원)에 이른다. 이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증내용으로 정한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693,3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을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판매계약 제8조 제2항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휴대전화, 유심 등 매입금액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0. 12.경부터 2021. 6.경까지 상호 합의하에 매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금액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유심 등 매입금액을 이미 차감(상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휴대전화, 유심 등 매입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판매계약 제9조는 '수수료 지급 방법 및 반환'이라는 표제하에 제5항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장려금 등의 채무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위 판매계약 제11조 또한 '변제의 총당'이라는 표제하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고(제2항), 소외 회사가 지급받을 금액이 없어 상계가 불가능하다면 소외 회사는 30일 내에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며(제3항), 소외 회사가 30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민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4항)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판매계약 제9조 및 제11조의 내용에다가 ① 앞서 본 이 사건 판매계약 제8조 제2항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휴대전화, 유심 등 매입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현금 변제, 상계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휴대전화 거래의 현실은 소외 회사와 같은 위탁판매 회사가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통신회사 또는 원고와 같은 공급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의 매입금액채권과 소외 회사의 수수료금액채권의 상계를 금지할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판매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금액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유심 등 매입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소외 회사가 특정 달에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금액보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휴대전화, 유심 등 매입금액이 더 큰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지급기한 및 해당 지급기한 도과 시 원고가 취할 조치까지도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20. 12. 22. 선수수수료 100,000,000원, 2020. 12. 24. 수수료

1,961,900원, 2021. 1. 13. 선수수로 24,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21. 4. 15. 선수수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까지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또는 선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그 이유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소속 직원으로 보이는 E과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F은 2021. 3. 18. 및 2021. 3. 24. 전화통화를 하였다(갑 제11호증의 1 녹취록).

위 2021. 3. 18.자 전화통화에서 E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 있음을 전제로 "3월달 거(2021년 3월분)는 4월 25일날 지급이 되니 그때부터 이제 3,000만 원씩 차감해서 지급하는 걸로"(위 녹취록 4쪽)라고 말하였는데, 이후 2021. 3. 24.자 전화통화에서 F은 "A(원고)에서 딱 2월, 3월 2월(2개월) 막아버려 갖고 사실 내가 현재 되게 힘들어요"라고 말하면서(위 녹취록 9쪽),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에 관하여 "1월 거 2월 거 해서 9,000 얼마예요"(위 녹취록 11쪽), "1월달 거가 4,000 얼마"(위 녹취록 12쪽), "총 4억(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1. 23. 지급한 대여금 300,000,000원 및 2020. 12. 22. 지급한 선수수로 100,000,000원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에 만약에 1월달 거 4,000 얼마를 빼면 3억 몇 천이 남았잖아요"(위 녹취록 12쪽), "총 4억을 빌린 걸로 계산해서 1월달 거는 끝났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4,000 얼마를 그냥 빼고 나면 3억 5,000 정도가 남아있을 거 아니예요"(위 녹취록 13쪽), "총 4억 중에 1월달 4,470만 원인가를 일단 빼고"(위 녹취록 14쪽), "3억 5,500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갖고 이번 달만 좀 풀어 2월달 거 4,580 정도가 정산이 댔는데 이거 정도만 풀어주시고 다음 달에 그냥, 원래 오늘 입금날이잖아요"(위 녹취록 14쪽), "그래서 이것만 좀 풀어주시고 다음달부터 좀 까면 어떻겠냐"(위 녹취록 14쪽)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E과 F 사이의 대화 내용, 특히 F의 위 각 발언 중 "1월 거 2월 거 해서 9,000 얼마", "1월달 거가 4,000 얼마", "1월달 거 4,000 얼마", "1월달 4,470만 원인가", "2월달 거 4,580 정도"는 표현은 모두 앞서 본 기초사실 표2 중 '수수료금액'란 2021년 1월분 55,076,700원, 2021년 2월분 73,154,100원이 아니라 '차액'란 2021년 1월분 44,731,700원, 2021년 2월분 45,127,500원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E과 F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금액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유심 등 매입금액을 자동 차감한 금액, 즉 앞서 본 기초사실

표2의 '차액'란 금액이 매달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차액'란 금액에서 2020. 11. 23.자 대여금 300,000,000원 및 2020. 12. 22.자 선수수로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 300,000,000원 + 100,000,000원) 중 얼마씩을 상계한 금액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실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E은 2021. 3. 18.자 전화통화에서 2021년 1월분 및 2월분 '차액'란 금액은 전액 위 400,000,000원과 상계하고 2021년 3월분(2021. 4. 25. 지급 예정) '차액'란 금액부터는 매달 30,000,000원씩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F은 2021년 1월분 '차액'란 금액은 위 400,000,000원에서 전액 상계하더라도 2021년 2월분부터의 '차액'란 금액은 매달 30,000,000원씩만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즉 원고와 소외 회사는 매달 소외 회사의 매입금액 전액을 수수료금액에서 차감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위 전화통화가 있는 후 실제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21. 4. 15. 선수수로 20,000,000원 및 2021. 4. 23. 수수료 3,464,600원 합계 23,464,600원(= 20,000,000원 + 3,464,6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기초사실 표2 중 2021년 3월분 '수수료금액'란 78,296,600원이 아니라 '차액'란 58,464,600원에서 35,000,000원을 상계한 금액이다(원고가 앞서 본 대화내용과 달리 30,000,000원이 아니라 35,000,000원을 상계하여 지급한 이유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양승우